

重商主義에 관한 小考

金 秀 行

<目 次>

緒 論
I. 重商主義의 本質에 관한 兩 見解
II. 市民革命과 初期近代國家의 經濟政策
III. 重商主義의 經濟理論
結 論

緒 論

重商主義(mercantilism, mercantile system)에 관한 論議는 「아담 스미드」(Adam Smith, 1723—90) 以來 거의 두세기에 걸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그 論議가 종결되어 올바른 解釋이 주어졌다고는 말할 수 없는 상태이다. 각 學者들은 자기대로의 重商主義觀을 가지고 있으며 歷史的 事實로서의 重商主義의 始期 및 終期에 관하여 相異한 見解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全體로서의 重商主義를 파악하지 못하고 그 一面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統一體制로서의 重商主義」(mercantilism as a unifying system), 「國力體制로서의 重商主義」(mercantilism as a system of power), 「保護制度로서의 重商主義」(mercantilism as a system of protection), 「貨幣體制로서의 重商主義」(mercantilism as a monetary system), 「社會觀으로서의 重商主義」(mercantilism as a conception of society) 등이 각각 논의의 중심이 되어왔다고 볼 수 있는데⁽¹⁾ 重商主義의 各側面을 綜合的으로 一貫性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重商主義의 期間 및 性格에 관한 理解의 混沌과 混亂은 歷史的 段階移行 및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에 관한 沒理解로부터 초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모든 主義主張 理論 政策은 반드시 그것을 밀고 나아가는 一群의 勢力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社會科學의 初步知識인데, 學問중에서도 특히 經濟學이라는 學問에 있어서는 階級性 黨派性이 현저하다. 그 이유는 經濟學이라는 學問이 직접으로 人間의 物質的 利害關係를 문제로 하는 學問이고 이 物質的 利害關係만큼 人間의 感情을 자극하고 態度를 명백하게 하도록 하는 것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本稿에서는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 즉 重商主義의 推進者를 밝히려고 우선

(1) Cf. Eli Heckscher, *Mercantilism*, 2 vols., 1935.

노력하였다. 이것은 近代資本主義 成立에 관한 經濟史의 研究에 그 기초를 두어야 할 것인데, 아직 완전한 결론이 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앞으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重商主義의 本質에 관해서는 지금까지의 研究를 요약하면서 重商主義下에서 추진된 政策 및 重商主義의 諸理論을 고찰함으로써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고찰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과 그것의 經濟政策과를 對應시켜 보는 것은 重商主義를 올바르게 解釋하는 하나의 方法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歷史上에 있어서는 언제나 一定時代의 支配階級은 자기들의 階級利益과 社會全體의 利益을 同一視하려고 하며 비록 同一하지 않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權力手段의 綜合體系인 國家를 작용시켜 자기들의 階級利益을 충족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時代의 支配階級이 아직 進歩的인 役割을 하고 있을 때에는 國家에 의하여 행해지는 經濟政策은 進歩的인 性格을 가지며 社會의 發展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段階에 있어서는 經濟政策의 階級的 性格은 명백히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支配階級이 이미 進歩的 役割을 할 수 없고 反動的인 役割만 하는 段階에 이르면 國家의 經濟政策은 이미 社會的 經濟的 發展이 문제가 아니라 支配階級の 利益擁護만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經濟政策을 둘러싼 階級的 利害關係가 對立하고 經濟政策의 階級性이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重商主義의 時代란 封建制의 崩壞로 말미암아 初期資本主義가 成立하는 移行期이라고 볼 수 있으며 資本의 原始蓄積期이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자면 重商主義期은 市民革命을 거쳐 新興부르조아階級이 權力을 確立하는 大鬪爭期이었으며 重商主義란 初期產業資本家階級이 자기의 勢力을 培養하기 위하여 내세운 經濟理論과 經濟政策의 總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經濟理論으로서의 重商主義는 그 時代의 經濟發展段階에 照應하여 科學的 經濟學의 萌芽를 나타내었다. 商品의 把握에 있어서 아직 완전히 성공하고 있지는 못하지만, 이러한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은 當時의 社會經濟的 狀態에 制約되면서도 그뒤의 「아담 스미드」 經濟學에의 기초로 발전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經濟理論을 취급하는데 있어서는 「스미드」에로의 발전이라는 각도에 큰 중점을 두는 것이 重商主義를 把握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I 重商主義의 本質에 관한 두 見解

「重商主義의 本質」이란 理論과 政策의 一體系로서의 重商主義가 어떠한 社會經濟的 基盤위에서 성립하였는가 라는 문제로 귀착된다.

이 문제는 重商主義의 理解에 있어서 가장 核心的인 문제이지만 아직까지 定說이 나온 것은 없으며 두개의 見解가 서로 對立되고 있다. 즉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初期 產業資本에 구하는 立場과 (近代的) 商業資本에 구하는 立場이 바로 그것이다. 後者가 이때까지의 通說이었는데, 經濟史學의 實證的 研究에 의하여 前者가 더욱 강하게 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²⁾

이 重商主義의 本質에 관한 論爭은 日本學界에서 크게 논란되었으므로, 이하에서는 그 本質을 初期產業資本에 구하는 見解(其Ⅰ)의 見解라고 以下에서 略稱함)와 (近代的) 商業資本에 구하는 見解(其Ⅱ)의 見解라 略稱함)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한 뒤 重商主義에 관한 論議를 進行시키려고 한다.

우선 其Ⅰ의 見解에는 大塚久雄⁽³⁾을 비롯하여 張漢裕⁽⁴⁾ 小林昇⁽⁵⁾ 등이 포함되고 있는데, 大塚教授의 主張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重商主義의 研究는 『國富論』이래 2 백년의 역사를 가지지만 아직 論爭은 종결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重商主義라는 用語가 가지는 歷史的 內實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담 스미드」가 『國富論』에서 重商主義 (mercantile system)라 命名하여 비판의 대상으로 한 것은 명백히 名譽革命 이후 특히 18세기 英國에서 지배적이었던 經濟政策體系와 그 배경을 이루었던 經濟理論이며, 「리스트」(F. List)가 『政治經濟學의 國民的 體系』(1841年)에서 重商主義라고 한 것도 기본적으로는 「스미드」와 同一對象이었다. 그런데 「슈몰러」(G. Schmoller)의 *Der Merkantilismus in seiner historischen Bedeutung* (1884年)에서는 重商主義가 時代的으로 擴延되고 그 歷史的 內實이 확장되어, 「스미드」의 경우 市民革命 이후의 初期부르조아 國家의 현실이 문제로 된 것과 달리, 그 이전의 絶對主義國家의 經濟政策體系와 그것을 뒷받침한 經濟思想이 오히려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되고 있다. 그리하여 그후의 研究史는 매우 확대된 대상 즉 絶對主義國家와 初期부르조아國家라는 전혀 對立하는 두개의 社會構成體를 引受하여 거기에서 발견되는 매우 다채로운 經濟政策이나 經濟思想 및 經濟理論中에서 최대公約수를 추출하여 그것을 重商主義라는 하나의 類型 혹은 概念중으로 포괄시키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리하여 重商主義란 概念이 부당하게 抽象化되

(2) 都留重人編, 岩波小辭典『經濟學』「重商主義」項 參照.

(3) 大塚久雄, 「重商主義成立의 社會的基礎」(舞出教授還曆紀念論文集 『古典學派의 生成と展開』, 有斐閣, 1957)

(4) 張漢裕, 『イギリス重商主義研究』, 岩波書店, 1954.

(5) 小林昇, 『重商主義의 經濟理論』, 東洋經濟新報社, 1952. 『重商主義解體期의 研究』, 未來社, 1957. 「重商主義」(岩波書店 『西洋經濟史講座』Ⅱ, 1960). 「重商主義」(有斐閣 『經濟學史講座』Ⅰ, 1964).

고 實質的인 核心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러한 狀態로부터 重商主義를 올바르게 歷史上 定立하기 위해서는 重商主義라고 불리우는 것이 역사상 대표하고 표현하여 온 社會的 利害 즉 重商主義成立의 社會的 基盤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다. 「스미드」는 重商主義의 全體의 企劃者로서 生産者(producers) 貿易商人 및 工業生産者 (merchants and manufacturers), 때로는 毛織物工業生産者 (woolen manufacturers)를 지적하고 있으며 「리스트」도 이 견해를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에 「슈몰러」는 重商主義의 概念構成의 裏面에는 商人 商業부르조아지의 社會的 經濟的 利害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슈몰러」의 견해는 명백히 經濟史의 事實에 모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名譽革命以後 「스미드」時代에 이르기까지의 保護主義 (protectionism)의 背後에는 工業生産者와 貿易商人의 共同의 經濟的 利害가 작용하고 있었는데 특히 工業生産者가 더욱 근본적이었고 重商主義成立의 추진자로 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大塚教授는 重商主義를 初期부르조아國家의 經濟政策 및 그 뒷받침으로서의 經濟理論이라고 歷史上 定立하고 있으며 그것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初期產業資本에 구하고 있다.

其 Ⅱ의 見解는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近代의 商業資本에서 구하는데 여기에는 白杉庄一郎⁽⁶⁾ 高橋誠一郎⁽⁷⁾이 포함된다. 白杉教授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重商主義란 近世西歐에 있어서의 本源的 資本蓄積期——生産樣式으로 말하면 소위 本來的 매뉴팩처時代——의 經濟政策體系이고 이것을 뒷받침한 思想體系이었다. 重商主義政策의 主體는 初期近代國家이고 그 目的은 民族國家의 統一과 植民帝國의 建設 그리고 그 기반위에서 資本制生産樣式의 成立을 助成하는 것이었다. 資本의 形態로 보면 重商主義의 支柱는 商業資本이었다. 즉 重商主義는 商業資本이 中央權力과 提携한 곳에 성립하였다. 그러나 重商主義의 支柱를 형성한 商業資本은 단순히 「前期的」인 商業資本이 아니라 近世的인 國家權力을 배경으로 한 外國貿易에 종사하는 特權의 혹은 獨立的 商業資本이었으며 또한 매뉴팩처를 기초로 한 商業資本이었다. 즉 重商主義의 支柱는 前貸制商業資本이 아니고 外國貿易에 종사하는 特權的 大商業資本이었는데, 이러한 大商業資本은 자기가 종사하는 貿易의 필요 및 外國과의 競爭의 필요에서 國內産業의 助成에 대하여 무시할 수 없는 주의와 노력을 경주하였다.

이와같이 其 Ⅱ의 見解는 絶對主義期에서 「스미드」에 이르기까지의 時期에 있어서 어떠한 本質的인 變화를 인정하지 않고 商業資本(前期的이든 近代的이든 간에)의 優位를 주장

(6) 白杉庄一郎, 『近世西洋經濟史研究序說—重商主義政策史論』, 有斐閣, 1950.

(7) 高橋誠一郎, 『改訂 重商主義經濟學說研究』, 改造社, 1940.

하며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商業資本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이상에서 重商主義의 本質에 관한 相異한 두 見解를 소개하였지만, 이것은 결국 封建社會에서 近代資本主義社會에로의 移行期에 있어서 資本形態의 역할에 관한 상이한 견해를 그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다시 말하면 其Ⅰ 및 其Ⅱ의 見解는 近代資本主義의 歷史的 源泉에 관하여 전혀 상이한 견해를 가진다는 것이다.⁽⁸⁾ 즉 其Ⅰ의 見解는 近代產業資本의 歷史的 源泉을 前資本主義的 生産關係중에서 성장하여 온 前資本制的 單純商品生産의 구체적 담당자인 獨立的인 「自營農民」(selbstwirtschaftender Bauer) 및 「獨立手工業者」(unabhängiger Handwerker)로 대표되는 「產業的 中產層」(industrieller Mittelstand) 혹은 中產的 生産者層의 自成的 展開過程중에 定立하려는 것이며, 其Ⅱ의 見解는 近代產業資本의 歷史的 源泉을 「商業資本」(Handelskapital) 및 「高利貸資本」(Wucherkapital)으로 대표되는 「前期的 資本」(Vorkapital)의 前資本主義的 生産關係에 대한 支配的介入에 의지한 發展的 轉化過程에 定立하려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重商主義에 관한 더욱 명확한 규정은 결국 資本主義成立期의 經濟的 現實에 대한 研究가 深化됨에 따라서 보다 높은 단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나 重商主義 (mercantile system)⁽⁹⁾에 관하여 최초의 포괄적 비판을 가한 「스미드」를 재음미하면서 지금까지 연구된 經濟史的 업적에 의존하여 重商主義를 다시 고찰하는 것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國富論』全卷이 비판의 대상으로 한 重商主義란 무엇인가? 그것은 「스미드」가 생존하고 있었던 그 當時 즉 市民革命을 거친 英國의 經濟政策 및 理論이었다. 近世絶對主義諸國家의 形成期로부터 英國產業革命의 開始까지의 期間 즉 거의 16세기초기에서 18세기후반까지의 300년에 걸쳐 「유럽」諸國을 지배한 經濟體制 政策 思想 理論의 總稱을 重商主義라고 하는 규정은 過度한 一般化에 빠질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폭넓은 歷史的 時期的 始期와 末期를 비교하면 그 사이에는 현저한 經濟的 變化와 發展이 보일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의 初期(初期資本主義期 매뉴팩처期 原始蓄積期)에 있어서는 支配的 勢力의 明確한 交替까지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同期間에 있어서 「유럽」각국은 그 初期資本主義의 前提 出發點에 相異가 있고 이것에 國際的으로도 國內的으로도

(8) 近代資本主義의 歷史的 源泉에 관한 論議는 다음을 參照하라. 田中豐喜 『產業的中產者と前期的資本』, 泉文堂, 1962. 角山榮 『資本主義의 成立過程』, ミネルヴァ書房, 1961. 大塚久雄 「總說」(『西洋經濟史講座』Ⅱ, 岩波書店, 1960)

(9) “重商主義者 및 重商主義라는 말은 17, 18세기의 전체를 통하여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 重商主義 (mercantile system)라는 말은 「스미드」의 손에 의해서만 비로소 그 의미를 획득하였다.” Charles Wilson, *Mercantilism*, 1958. p. 3.

제약되면서 그 후의 發展에도 遲速과 過程의 差異가 생기기 때문에 각국의 重商主義도 또 당연히 그 段階의 相異와 類型的 個性에 따라서 파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重商主義의 歷史的 意義는 그것이 產業革命과 經濟的 自由主義를 낳고 또 자신의 비판자로서의 經濟理論體系 특히 『國富論』을 성립시킨 점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직접으로 이것들을 경험한 英國의 重商主義를 가장 전형적인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 英國重商主義의 根本的 特質은 그것이 자신의 성립기반으로서의 市民革命(淸教徒革命과 名譽革命)을 가지고 英國 다음의 先進國 「프랑스」에 비해서까지 絶對主義의 廢棄란 점에서 百年이상이나 앞섰다는 점이다. 그리고 『國富論』이 비판의 대상으로 한 것도 결코 市民革命을 거치지 않은 他國의 政策이나 理論이 아니라 「스미드」가 생존하고 있었던 그 當時 즉 市民革命을 거친 英國의 經濟政策이나 理論이었다.

따라서 重商主義를 엄격히 時期的으로 限定하며 典型的으로 重商主義期를 거친 國家로서 英國을 채택하는 것이 重商主義를 올바르게 파악하는 길일 것이다.

II 市民革命과 初期近代國家의 經濟政策

市民革命(bourgeois revolution)은 政治史的으로는 絶對主義 기타의 封建權力을 打倒하고 부르조아지 및 一般市民을 解放하여 近代國家를 수립한 급격한 政治變革이 있으며, 革命에 의하여 私有財產制가 확립되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政治的 自由와 立憲主義의 方向이 취해졌다. 經濟史的으로는 이 革命은 社會의 胎內에서 일어난 資本主義的 發展의 結果로서 封建的인 生産關係가 一掃되는 過程이었으며, 革命에 의하여 한꺼번에 資本主義가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그 方向을 향하여 土地를 중심으로 하는 生産手段이 全面的으로 商品化되었다. 이와같이 市民革命이란 말할 것까지도 없이 封建的 權力으로부터 부르조아의 權力에로의 支配의 交替를 의미하므로 각국에서의 뉴앙스의 차이는 있다 하여도 그 以前과 以後를 일관하는 政策體系의 一貫性은 있을 수 없으며 兩者는 오히려 서로 對立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英國의 市民革命은 일찍이 淸教徒革命 (1640—60年)을 거쳐 名譽革命(1688年)에서 일단 그 목적을 달성하여 初期產業資本을 위한 政策體系가 확립되고, 「프랑스」에서는 名譽革命보다 1세기 뒤늦게 大革命(1789年 開始)이 일어났으며, 獨逸에서는 더우기 반세기뒤에 소위 3月革命(1848年)이 불철저하고 타협적인 부르조아革命으로 귀결하였다. 美國에서는 獨立戰爭(1776년에 獨立宣言)이 동시에 美國革命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名譽革命

이후의 英國은 大革命後의 「프랑스」, 3月革命後의 獨逸, 獨立戰爭後의 美國과 同列에 서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또한 『國富論』이 그 비판의 대상으로 한 英國의 政策은 「콜베르」(J. B. Colbert, 1619—83)의 政策 즉 17세기말 「프랑스」絶對主義의 政策과 전혀 그 성격이 다르며, 오히려 그것은 18세기말 이후 특히 「나폴레옹」의 大陸制度, 1789년 이후 美國의 保護制度, 獨逸의 關稅制度등과 그 위치를 같이 하며, 理論的으로는 「프랑스」의 「페리에」(F. L. A. Ferrier, 1777—1861年), 獨逸의 「리스트」(1789—1846年), 美國에 있어서는 「해밀턴」(Alexander Hamilton, 1757—1804年) 이후의 「아메리카」體制論者들(예컨대 D. Raymond, 1786—1849年)의 주장과 그 궤도를 같이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장 전형적으로 重商主義가 나타났던 英國에 있어서의 市民革命과 初期近代國家의 經濟政策을 이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絶對王政을 전복하고 近代의 議會政治에로의 길을 연 英國의 市民革命에는 前記 「스튜어트」王朝를 전복한 淸教徒革命(1640—60年)과 後期 「스튜어트」王朝를 전복한 名譽革命(1688年)이 있다. 市民革命이라는 점에서 「프랑스」의 大革命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은 淸教徒革命을 정점으로 하는 流血革命이지만, 부르조아의 支配體制가 法的으로 확립된 것은 名譽革命에 의해서였다. 이 名譽革命의 意義는 17세기를 통하여 鬪爭한 絶對主義王政에 대한 市民層과 結合한 近代의 地主層의 勝利였으며 말하자면 이 革命은 淸教徒革命의 完成이며 議會主義의 勝利이었다.

1689년에 소집된 臨時議會는 英國의 憲法중 가장 중요한 文書인 「權利章典」(Bill of Rights)을 성립시켰다. 거기에는 議會內에서의 言論의 自由 議員選舉의 自由 議會의 開催 등이 보증되어 있으며, 國王의 法律停止權·法律適用免除權·宗教裁判所設置 등이 違法으로 확인되고 있고, 더우기 國王에 의한 金錢의 徵收나 常備軍의 維持 徵集이 議會의 承認을 必要로 하게 정해지고 있다. 이 章典은 또 王位繼承의 順序를 정하여 舊教徒를 王位로부터 排除하였지만 그 뒤(1701年)의 「王位繼承確定法」(Act of Settlement)에 의하여 王位도 결국에는 議會에 의하여 결정되게 되었다. 이리하여 名譽革命은 그 직접의 성과로서 原始契約이라는 社會理念에 의거한 議會主權을 성립시켜 市民革命의 귀결로서의 近代國家를 만들어낸 것이다.

이리하여 성립한 初期부르조아國家의 主體 내지 推進力은 究極的으로는 初期產業資本 특히 매뉴팩처資本이었다. 이 時期에 있어서는 行政權에서 독립한 議會의 構成員은 地主 貴族과 商人이었고 選舉制度도 中産階級以下의 參加를 허가하지 않고 이것의 改革은 1832年의 選舉法改正을 기다리지 않으면 안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市民革命의 大衆的

에네르기의 中核을 이룬 初期産業資本은 一方에서는 近代化하고 있는 地主의 利益과 結付하고 他方에서는 意識上 아직 자기와 미분리상태에 있었던 광범한 勤勞大衆의 動員力과 그를 위한 宣傳手段과를 手中에 넣어 議會(특히 庶民院 House of Commons)를 통하여 자기의 要求를 實現시켰다. 이 경우 初期産業資本의 利益은 舊地主的·特權商人的 利益을 대표하는 「토리」黨(Tories)에 대하여 「휘그」黨(Whigs)에 의하여 代辯되고 後者は 名譽革命직후의 약 10년간의 建設期와 1714—1760年間の 長期에 걸쳐 政權을 掌握하고 특히 第2의 支配期는 「휘그」支配(Whig-supremacy)의 時代라 불리우고 있다. 이 時代에 英國政界의 內情은 매우 變化하고 이 뒤를 이은 「토리」의 支配도 産業革命(1760—1830年頃)에 의한 資本主義의 體制의 支配와 곧 이것에 따른 産業資本家자신의 議會에의 登場과를 막을 수 없게 된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휘그」支配의 형태를 취한 初期부르조아國家 내지 初期産業資本의 政策目的은 어찌하였던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國家權力에 의하여 資本의 原始的 蓄積을 組織的으로 強行하고 社會構造중의 前資本主義的 部分을 消滅시켜 資本主義體制의 全面的 支配를 완성시키는 것이었다. 이 이후는 資本主義가 자신의 힘으로 성장하게 되기 때문에 重商主義는 權力에 의하여 社會經濟體制의 成長을 포함하는 變革을 목적하여 실현하였다는 점에 특질이 있다.

原始的 蓄積(die ursprüngliche Akkumulation)이란 한마디로 말해서 資本主義成立의 物質的 基礎를 형성하는 過程이며 이것은 資本의 蓄積과 勞動者의 創出과를 기본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初期産業資本家가 자기들의 階級利益을 추구하기 위하여 國家를 움직여 原始蓄積을 더욱 진행시켰다는 점이며 이것이 重商主義經濟政策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이다. 初期産業資本家는 封建的生產樣式의 資本主義的 生產樣式에로의 轉化過程을 溫室的으로 助長하고 過渡期를 短縮하기 위하여 社會의 集中的 組織的 暴力인 國家權力을 利用한 것이다.

「마르크스」는 「原始的 蓄積의 諸契機」의 英國에서의 體系의 總括로서 植民地制度 國債制度 近代的租稅制度 保護制度등을 들고 있는데, ⁽¹⁰⁾ 이하에서는 重商主義의 社會經濟的 基盤을 더욱 명백하게 한다는 意圖를 포함하면서 初期近代國家의 經濟政策을 保護制度 舊植民地制度 信用租稅制度로 나누어서 간단히 서술할 것이다.

1. 保護制度

重商主義는 貿易政策에 있어서 保護制度를 특징으로 하여 原始的 蓄積의 기타의 諸契機

(10) K. Marx, *Das Kapital*, 第1部 第24章.

를 이것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고 있었다. 그런데 이 段階에 있어서의 英國의 保護制度는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 이 保護制度는 初期産業資本(매뉴팩처)을 위한 國內市場의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低賃金を 무기로 하는 後進諸國의 競爭으로부터 이미 形成과 成熟의 도상에 있는 國內市場을 수호하는 것을 중심목적으로 한 것이며 國內市場의 創出과 매뉴팩처의 育成은 오히려 後進諸國(예컨대 「프랑스」 獨逸 美國)이 뒤에 각각의 重商主義段階에서 목표로 한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原始的 蓄積의 一契機인 貨幣資本으로 轉化할 貴金屬의 획득을 위하여 外國貿易에서의 輸出超過(소위 favorable balance of trade)가 열망되었으며 外國市場의 확보 확충도 産業資本을 위하여 희망되었다는 점이다.

重商主義期の 英國의 高賃金 高生産費는, 原始的 蓄積의 展開가 이미 大陸諸國보다 훨씬 진전되어 있고 그것에 따른 商品經濟化→生産者の 自給的 基礎의 喪失(土地로부터의 驅逐)과 아직 매뉴팩처가 機械 아닌 道具를 사용하였다는 사실에 연유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間에 있어서의 英國의 比較的 高賃金 高生産費 때문에 後進諸國으로부터의 工業製品의 輸入을 高關稅에 의하여 방지하거나 직접으로 禁止하는 것은 英國의 初期産業資本이 國內市場을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위적 수단이었다.

매뉴팩처期の 英國의 支配的 工業「國民의 工業」은 毛織物製造業이고 國內市場은 이것을 기축으로 점차로 형성된 것인데, 重商主義의 保護制度는 직접으로 毛織物매뉴팩처의 利益을 나타내었다. 英國에서는 이미 14세기 전반부터 國王의 財政目的을 위하여 外國毛織物의 輸入禁止와 國產羊毛(및 羊)의 輸出禁止가 행해지고 또 國產毛織物의 使用이 強制되었는데 이들 措置는 法令을 갱신하면서 점차로 매뉴팩처자신을 위한 것으로 된 것이다. 또한 1700년에는 輸出毛織物은 財政關稅가 免除되고 18세기의 중엽에는 原料로서의 外國產羊毛의 輸入關稅도 免除되었다.

그러나 毛織物은 그 競爭者로서 外國의 細 麻 絹 등 각종 織物을 가지고 특히 印度產의 綿織物은 그 價格의 현저한 低位와 大衆用品으로서의 性質 때문에 17세기말에는 英國毛織物의 최대의 敵으로 되고 직접 간접으로 그 內外市場의 喪失이라는 위기를 일으켰다. 이러한 事態에 즈음하여 毛織物매뉴팩처는 綿織物의 輸入者였던 東印度會社와 이를 支持한 政府에 대하여 大衆과 宣傳手段을 動員하여 격렬한 공격을 가하여 차례차례로 印度產綿織物의 輸入稅加重(1685年) 使用禁止(1700年) 그 擴充(1721年) 등의 措置를 획득하였다. 이것은 外國貿易의 分野에서 아직 有力하였던 特權團體(이 경우는 前期的 商業資本)에 대한 産業資本의 勝利이었다.

毛織物이외의 諸매뉴팩처에 대해서도 關稅 혹은 競爭製品의 輸入禁止가 새로이 행해져 國內市場이 보호되었다. 이들 공업제품중 毛織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鐵 眞鍮 白鐵(錫과 鉛의 合金)등의 金屬製品이었다. 특히 「웨일드」의 刀物類나 「버밍감」 및 그 주변의 다양한 금속제품은 18 세기에는 점차로 外國市場을 확대하게 되었는데 그 생산력은 보호관세하에서 배양된 것이었다. 또한 絹 麻 木棉등의 諸纖維工業과 종이 유리 도자기 피혁등의 諸工業에 대해서도 보호제도 보호관세가 설정되었는데 이것은 育成關稅의 역할을 하여 광범히 매뉴팩처를 발달시켰다. 특히 木棉工業은 印度木棉의 輸入禁止에 의하여 「레반트」地方 대신에 西印度植民地를 原料供給地로 개척하는 것에 의하여 급속히 國內市場을 개척하였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 木棉工業은 金屬工業과 함께 産業革命의 開始에 있어서 매우 큰 推進力으로 되는 것인데, 그것이 19 세기에 들어와서도 아직 두터운 保護關稅의 은혜를 입고 있었다는 것은 주목할 가치가 있는 것이다.

英國重商主義의 保護制度의 최대의 특징은 그것이 농업에 대한 보호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諸穀物에 대한 輸出獎勵金制度가 특정의 穀物保護關稅에 부가하여 곡물의 수출관세의 폐지와 더불어 1689 年에 확립되었다. 곡물에 대한 강력한 보호제도는 당연히 임금의 등귀를 야기시킬 것이기 때문에 그 한도에서는 매뉴팩처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고 산업자본의 보호와 모순한다. 그러나 역사의 이 단계에 있어서의 「穀物法」(Corn Law)은 穀作을 위한 인클로저를 촉진하여 原始的 蓄積을 추진함과 동시에 農業生産力을 증가시켜 穀價의 安定 및 低落까지도 기대할 수 있게 할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제도가 시행되었던 것이다. 이리하여 穀物法은 1730 년경부터 「잉글랜드」 1760 년경부터는 「스코틀랜드」에 확대되고 있었던 農業革命의 支柱를 이루고 이 방면에서 産業革命을 준비한 것이다. 이리하여 1730 年까지는 穀價는 穀物法에도 불구하고 名譽革命以前의 水準보다 더욱 低落하고 오히려 賃金の 騰貴를 部分的으로 카바한 것이다.⁽¹¹⁾

初期産業資本을 위한 保護制度和 관련하여 重商主義의 勞動政策 즉 近代의 프로레타리아 創出의 政策을 살펴보자. 이 時期를 통하여 賃金は 騰貴의 傾向이 있었는데, 産業資本은 이 경향에 대항하면서 不況時에는 특히 賃金を 引下하려고 하여 絶對王制가 제정한 工業 勞動者(단 前貸制下의 小生産者)에 대한 保護의 諸立法을 점차로 空文化시켜 1757 年에는 毛織物勞動者의 反對를 물리치고 이 부문에서 舊來의 賃金規制(賃金保護)를 폐지시키게 되었다. 또한 勞動者에 대한 새로운 內容의 團結禁止法은 18 세기를 통하여 때때로 발표

(11) 穀物法論爭과 「反穀物法同盟」(Anti-Corn-Law League)이 일어난 것은 1815 年의 穀物法 이후의 일이다.

되었다. 이것들은 매뉴팩처가 추구한 「産業의 自由」의 달성의 일편이었다. 그리하여 이 方向은 1799—1800 年에 있어서의 「全般的 團結禁止法」(General Combination Acts)의 制定과 1813—14 年에 있어서의 「職人條例」(Statute of Apprentices or Artificers)(이것은 1563 年에 제정되어 英國 絶對王制의 勞動立法의 頂點을 이룬다)의 廢止에 의하여 완성하는 것이다. 또한 이 時期에는 生産手段을 잃은 大衆과 그 孤兒에 대하여 絶對王制下의 治安維持의 一施設이었던 敎導所(house of correction) 대신에 強制作業場(workhouse)을 설립하여 「貧民救濟」의 制度를 보충함과 더불어 勞動力의 供給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이 행해졌다.

2. 舊植民地制度

舊植民地制度의 基本을 구성한 것은 「航海諸條例」(Navigation Acts)이었는데, 이 諸法은 對植民地貿易과 植民地特産品의 中繼貿易을 自國의 船舶으로 독점하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植民地를 자국을 위한 原料市場 製品販賣市場으로 역할하도록 하였다.

17 세기에서 産業革命開始期까지의 英國의 主要植民地는 「아일랜드」 西印度諸島와 「뉴잉글랜드」를 北端으로 하는 北美의 東部이며 「뉴파운드랜드」는 漁場으로서 중요하였다. 「아시아」의 印度는 이 시기에는 아직 東印度會社의 貿易據點이었을 뿐이었다. 위의 植民地중 「아메리카」의 諸植民地는 西印度가 주로 砂糖 糖蜜 胡椒 棉花등을 생산하여 砂糖植民地라 불리워지고 「메릴랜드」以南의 大陸이 煙草 米 木造船建造用의 諸材料 毛皮등을 생산하여 煙草植民地라 불리워지고 「펜실베니아」以北은 小麥 家畜 木材등을 생산하여 食料植民地라 불리웠다. 南部植民地에 棉花의 재배가 급속히 발달한 것은 18 세기 말부터이다.

英國本國에 대하여 「아메리카」의 諸植民地는 工業製品 특히 毛織物의 市場으로서, 經濟的自立을 위한 諸資材의 供給者로서, 國內市場을 위한 또 仲介貿易을 위한 諸特産品의 供給者로서, 黑人奴隸의 市場으로서, 더우기 海運業의 育成者로서——이리하여 결국은 經濟的自立과 擴大에 따른 總貿易差額의 현저한 增加分의 提供者로서 重視되었다. 이 때문에 植民地에 대한 貿易과 生産의 諸統制는 原始的 蓄積의 諸契機중 가장 強力한 것으로 된 것이다.

航海條例의 중심은 1651 年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 年)이 發布한 Navigation Act 와, 이것을 확충하여 1660 年에 「찰스」2 世가 공포한 Navigation Act (통칭 「海上憲章」 Sea Magna Carta)와 1663 年의 「貿易促進條例」 Act for the Encouragement of Trade (통칭 「市場法」 Staple Act)이다. 그 목적은 첫째로 17 세기의 一大仲繼貿易國 和蘭의 패권을 타도하고 英國의 海運業(造船業) 貿易業을 보호하는 것, 둘째로 1660 年法

의 「列擧品條項」(Enumeration Clauses)과 1663년의 「市場法」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美國 기타 植民地의 物資 市場 貿易의 獨占을 도모하는 것이었다. 즉 植民地貿易을 거의 英國 船으로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列擧品條項」에서는 列擧品인 綿花 藍 砂糖 煙草 染料木 기타 植民地特産物의 輸出은 반드시 英國船에 의하여 英國本國의 港口에 대해서만 행해져야 한다고 규정하여 母國을 植民地産物의 唯一의 輸入市場으로 하였다. 더우기 1663년의 「市場法」에 의하여 植民地에로의 모든 「유럽」商品의 輸出에 대해서도 英國本國을 唯一의 輸出市場으로 할 것을 규정하여 美國등의 植民地貿易의 獨占을 확정하였다.

航海諸條例는 本國매뉴팩처를 위하여 植民地市場에서의 外國의 競爭을 배제하였으며, 植民地自體의 工業生産에 대한 禁壓政策에는 「아메리카」北部의 食糧植民地(주로 「뉴잉글랜드」)에 가해진 1699년의 「羊毛條例」(Wool Act), 1750년의 「鐵條例」(Iron Act)등이 있었지만 18세기후반까지는 본격화하지 않았다.

舊植民地制度는 당시의 統制에 필연적으로 뒤따른 온갖 缺陷과 非能率에도 불구하고 前述한 經濟上의 諸目的을 거의 달성하여 막대한 이익을 本國에 주었다. 그것은 더우기 砂糖 煙草植民地로부터의 利潤의 選流나 關稅收入의 增大등에 의해서도 本國을 이롭게 하였으며, 이리하여 17세기말에는 植民地가 英國에 貨幣的 富를 갖다주는 主要部門으로 되었다. 특히 砂糖植民地와 煙草植民地 더우기 前者의 意義는 컸다. 거기에서는 土地의 特權的 獨占과 黑人的 強制勞動에 의하여 單一換金作物의 대규모 재배를 목적으로 하는 프란테이션이 經營되어 그 主産物과 副産物(糖蜜 람酒등)에 의하여 栽植者의 利潤은 막대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프란테이션의 諸生産物이나 黑人 및 消費品을 供給하는 本國의 海運業者, 仲介商, 그들이 의존한 金融業者, 더우기 金權政治에 참가하고 있었던 植民地行政官들의 利潤이나 利得이 훨씬 컸었다.⁽¹²⁾

이와같이 舊植民地制度에 있어서는 仲介貿易 黑人去來 프란테이션 特權의 官吏등의 前期의 利益이 더욱 두드러지게 보인다. 그리고 航海條例는 18세기에 들어와서 Russia Company 나 Levant Company 등의 特權會社와의 利益의 調和를 피하고 있다. 그러나 舊植民地制度가 原始的 蓄積의 중요한 계기로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동시에 植民地를 本國의 工業製品에 대한 最良의 海外市場의 하나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18세기의 10年代頃에는 輸出額중 半이 毛織物이고 다음에 鐵製品이나 靴 帽子등이 중요하였고 그들은 馬나 諸食料를 능가하였는데, 毛織物을 주로 하는 本國매뉴팩처의 利益이 經濟的 自立(自給)이라

(12) Cf. Paul A. Baran, *The Political Economy of Growth*, Monthly Review Press, New York, 1957, Chapter V. On the Roots of Backwardness.

는 國民主義의 目的과 結合하면서 舊植民地制度를 뒷받침한 것이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이 制度는 어느만큼 總貿易差額을 英國을 위해 증가시키고 그 貨幣的 富를 증대시켰다 하여도, 이미 本 바와 같은 東印度貿易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產業資本의 격렬한 공격을 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產業資本이 오히려 舊植民地制度에 의하여 東印度會社라는 前期的 資本의 活動(특히 東印度에 로의 貨幣資本의 流出)을 허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더욱기 英國의 全經濟機構로부터 보면, 舊植民地制度의 全體도 또 產業資本이 國內 및 거의 全世界에 걸쳐 확보할 수 있었던 廣大한 市場을 배경으로 그 의의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英國의 舊植民地制度는 그 前期的 性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點에서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

3. 近代的 信用租稅制度

重商主義期를 통하여 經濟的으로는 貿易差額이 順調를 계속하고 銀은 대량으로 英國에 유입되었지만, 英國에서는 銀의 金에 대한 價値率이 國際水準보다 높았기 때문에 銀이 流出하고 대신 金이 流入되어 종래의 銀本位制는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으므로 金本位(法制化는 1816年)에 경사하는 複本位制(法制化는 1717年)로 되어 鑄貨事情은 混亂과 不便이 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近代的 信用制度의 발달은 貨幣制度上의 이 缺陷을 보충하고 혹은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여 原始蓄積을 進행시킨 것이었다.

名譽革命의 政權은 1694年에 「잉글랜드」銀行(The Bank of England)을 창설하여 對 「프랑스」 戰爭에 의한 公債를 정리하였지만, 이것에 대하여 銀行은 商業어음의 割引을 통하여 「잉글랜드」銀行券을 發行하고 이 경우 公債는 貴金屬과 더불어 銀行信用의 基礎로 되었다. 이것에 의하여 公債는 長期化하고 流通 支拂手段은 增大하고 政府와 부르조아지의 利害는 긴밀히 一體화하여, 「잉글랜드」銀行은 한편으로 舊地主의 利益과 결부되는 土地擔保發券銀行(land bank)의 諸企劃을 배제하면서 제한된 의미이긴 하지만 中央發券銀行으로서의 役割을 하게 되었다. 地方에서는 매뉴팩처를 基반으로 하는 各種의 金融業者가 어음割引을 통하여 「런던」과 결부하고 18세기 中엽경에는 그들중에서 地方의 發券銀行이 성장하여 왔다. 이리하여 庶民을 위한 鑄貨의 事情은 혼란을 계속하면서도 貨幣資本의 供給은 점차로 풍부하게 되어 이 時期의 마지막에는 公債의 利子率이 3%까지 저하하고 있었다.

그리고 重商主義의 諸政策은 그 經常的 費用(公債의 利子支拂을 포함)을 獨自의 體係를 이루는 租稅로 應당하였다. 租稅는 地租 消費稅 關稅가 주요한 種類이었는데, 土地所有者가 부담하는 地租(land tax)가 가장 중요한 항목이었다. 이리하여 地租負擔輕減의 努力은 당연히 地主의 측으로부터 行해졌지만, 그 全廢는 결국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原始蓄積의

進行에 따른 商品經濟의 급속한 확대는 地租 다음가는 巨額의 收入인 國內消費稅를 資本과 大衆을 抑壓하지 않고 증대시켜 이 時期의 말기에는 兩租稅收入의 지위는 역전하였다. 近代租稅制度의 基礎인 所得稅가 성립하는 것은 1842년에 이르러서이다.

III. 重商主義의 經濟理論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은 資本主義에로의 移行期 즉 原始蓄積期라는 社會經濟狀態에 照應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에서 그 이후의 經濟理論과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첫째로 資本主義社會가 그 支配를 완료하는 過渡期的 時期이었으므로 富가 아직 商品一般으로서 파악되지 않고 資本主義以前의 富의 觀念 즉 土地=富라는 觀念이 잔존하고 있어 商品의 本質에 관한 理解를 방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土地가 그 物質創造力에 의하여 勞動과 함께 商品의 形成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 貴金屬(貨幣)도 그 자체가 一般商品보다 뛰어난 富로서 파악되고 있다는 점이다. 資本主義以前에 있어서는 貨幣가 商業資本 高利貸資本으로 蓄積되었기 때문에 貴金屬=富의 觀念은 위의 土地=富의 觀念과 모순없이 양립할 수 있었다. 그리하여 重商主義期에 있어서는 貿易差額의 黑字의 實現→貴金屬의 流入이라는 國民經濟의 必要가 貴金屬=富라는 낡은 觀念과 결부하여 여기에서도 商品의 本質의 把握이 방해되었다.

셋째로 原始蓄積期의 經濟理論의 本質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貿易差額의 順逆은 保護制度의 成敗의 지표로서 또 商品經濟의 擴大와 產業資本을 위한 貨幣(貨幣資本)의 증가의 필요로부터 중시되었기 때문에, 重商主義期에 있어서는 貴金屬은 蓄藏될 수 있는 뛰어난 富로서가 아니고 오히려 불가결한 流通手段 즉 有效需要를 형성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는 점이다.

넷째로 經濟成長이 아직 직접 資本의 蓄積으로서 파악되지 않고 오히려 自給經濟를 출발점으로 한 商品經濟의 擴大나 農工分離(獨立農民으로부터 手工業者의 分離)→農工兩部門間的 商品去來의 發展으로서 파악되었고 이 過程의 추진을 위하여 有效需要와 貨幣가 불가결한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經濟理論이 流通의 局面을 중시하고 生産局面의 分析에는 깊이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여기에 理論의 限界가 보이지만 이러한 有效需要의 視角이 商業資本을 위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다섯째로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은 生産局面의 分析을 깊게는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은 有效需要의 視角이 특히 중요하였기 때문만은 아니다. 原始蓄積期에 있어서는 광범한 獨

立生産者層이 잔존하였을 뿐만 아니라, 初期産業資本家들도 小매뉴팩처主 또는 近代的 借地農으로서 근로대중의 일원이라고 생각되는 것이 보통이었기 때문에, 生産은 기본적으로 獨立生産者의 模型으로 분석되었다는 점이다. 그리하여 賃金과 利潤의 구별이 아직 명백하지 않고 또 資本 및 資本家란 概念이 생겨나지도 않고 이리하여 資本主義의 生産에 대하여 성공적으로 분석할 가능성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重商主義期의 經濟理論家와 관련지우면서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의 推移를 略述하고자 한다.

貿易差額說은 한편에서는 매뉴팩처資本을 위한 國內市場保護의 요정이 강력하였고 다른 한편에서는 貴金屬(鑄貨)이 日常去來에서 유통하며 信用의 기초에도 불가결하였으므로 重商主義期의 理論에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데 이 貿易差額說에서 自由貿易論이 발전하여 오는 길에는 두가지가 있었다. 하나는 「토리」黨의 自由貿易論(Tory-free-trade)이고 다른 하나는 機械的 貨幣數量說인데, 後者が 오히려 「스미드」에 접근한 위치에 있다. 前者는 「먼」(Thomas Mun, 1571—1641)에서 시작한다. 「먼」은 소위 個別的 貿易差額說(particular balance of trade)을 비판하고 全般的 貿易差額說(general balance of trade)을 정립하여 諸個別差額의 清算殘額만이 나라의 財實을 구하는 경우의 기준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 全般的 貿易差額說은 特許狀을 가진 商人側에서 個別的인 貿易 換統制에 대한 반대로서 정립한 것이기 때문에, 「먼」의 主著『England's Treasure by Foreign Trade, or, the Balance of our Foreign Trade is the Rule of our Treasure』(1664年)는 전체로서 自由貿易論의 주장의 색채가 강하다. 이와같은 「먼」의 의미에서의 自由貿易의 주장은 東印度會社의 대표자들을 중심으로 17세기의 最후의 10년간에 그들의 이익의 방위를 위하여 주장된 것이다. 이 주장자들은 「바본」(N. Barbon, 1640—1698) 「노드」(D. North, 1641—1691) 「차일드」(J. Child, 1630—1699) 「다브난트」(C. Davenant, 1656—1714) 등이었다. 그들은 印度의 綿織物의 輸入이 英國의 대표적 國民산업인 毛織物매뉴팩처의 관료들 배았는다는 사실을 도호하려고 하여 抽象的 國際分業 自由貿易의 利益을 설명하여 보호주의자들의 비판에 대항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名譽革命後 「프랑스」에 망명하여 아직 잠재세력을 가진 「스튜어트」絶對王家와 깊이 결합하고 있었던 당시의 「토리」黨내의 有力자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의 주장을 「토리」黨의 自由貿易論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주장의 社會的 背景은 「스미드」의 自由貿易論과 결코 같은 것도 아니며 그들의 주장은 「스미드」의 自由貿易論에 직결되는 것도 아니다.

「스미드」의 자유무역론에 접근한 것은 오히려 機械論的 貨幣數量說이었다. 즉 貿易差額

의 黑字에 의한 國內의 貴金屬의 增加는 그것에 비례하는 物價騰貴를 일으키고 그 결과 外國 商品의 輸入의 增加 國產商品의 輸出의 減少 貴金屬의 流出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保護制度는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반더린트」(J. Vanderlint?—1740) 「훤」(D. Hume, 1711—1776)에서 거의 완전히 전개된 것이다.

國內市場의 파악을 고찰하자.

英國의 保護制度는 相對的 高賃金—輸出不振이라는 관념아래에서 外國商品의 침입으로부터 國內市場을 보호하며 상실할 國外市場의 代償으로서 國內市場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그런데 國內市場 즉 home consumption에는 不生産階級에 의한 奢侈的 消費(國產奢侈品에 대한 消費)와 生産階級の 相互的 消費(節約—蓄積도 포함)의 두 方向이 있었는데, 이 選擇은 重商主義體制內에 잔존한 舊利益(舊地主 및 前期的 資本)과 生産者大衆과의 對立중에서 구해질 수 있었다. 前者는 國產製品에 대한 地主 商人階級の 奢侈가 保護主義의 要請과 兩立할 수 있었기 때문에 不生産的인 富者階級の 社會的 意義를 인정하려는 理論的 努力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바본」—「만드빌」(B. Mandeville, 1670—1733)의 *The Fable of the Bees*(1714)—「스튜아트」(J. D. Steuart, 1712—80)의 *An Inquiry in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Economy*(1767)라는 系譜를 가지면서 「말더스」에 연결된다. 「스튜아트」의 『原理』는 5編으로 나누어져 第1編 「人口와 農業」 第2編 「交易과 産業」 第3編 「貨幣와 信用」 第4編 「公債와 換」 第5編 「租稅」로 구성되어 있는데, 貨幣的 諸契機를 根幹으로 하는 統制의 큰 役割과 有效需要의 決定的 重視로부터 目前의 段階를 分析하고 있다. 따라서 그것은 貨幣經濟理論의 일단의 완성이고 「流通經濟學」의 「總體系」의 성립이며 最初의 經濟學體系化이었다. 重商主義의 經濟理論이 貿易差額說을 통하여 貨幣的 要因을 가장 중시하였다고 한다면 「스튜아트」의 體系 이것이 重商主義의 完成이고 그 頂上이었다고 볼 수 있다.

다음은 「스미드」에로의 接續에 있어서 더욱 중요한 것으로서, 生産者大衆의 立場으로부터 國內市場의 理論的 把握은 일찌기 「데포」(D. Defoe, 1661?—1731)의 *A Plan of the English Commerce* (1728)에서 나타났고 거기에서는 勤勞大衆의 消費力의 重視—高賃金の 承認의 理論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나 保護制度는 黑字의 貿易差額의 要請과 결부하면서 輸出을 위한 低賃金を 요구하였으므로, 풍부한 國民的 消費의 意義의 認識—高賃金の 許容 내지 要請은 保護主義의 內部에서 생긴 그 自己解體의 方向을 나타낸 것이고 그것은 대개 「데포」—「반더린트」—「훤」—「터커」(J. Tucker, 1713—99)의 系譜를 가지고 있다. 「반더린트」는 가장 분명히 勤勞大衆의 消費力을 중시하고 이리하여 人道

主義의 입장으로부터 重商主義의 低賃金の 요청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반더린트」에 있어서는 機械的 數量說과 自動的 調節機能論이 있음과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貿易差額에의 執着이 있었으므로, 國內市場의 기초인 高賃金은 인클로저의 強行→穀價의 低落에 의한 實質賃金の 引上에서 구해졌으며 名目賃金으로서는 오히려 그 引下가 희망되고 있었다. 그러나 「스미드」의 직전단계에 있는 「터커」에 이르면, 國內市場은 각각 近代의인 農工生産部門間에 있어서의 「勞動과 就業과의 相互循環」이고, 生産者는 상호 消費者로 되는 것에 의하여 그 販路를 확보하며 不生産階級과 不生産的勞動은 전혀 불필요하다고 하였다. 즉 여기에서는 「스미드」의 生産的 勞動이라는 觀念의 일면인 商品을 생산하는 勞動 有用勞動의 觀念이 확립되어 있으며 그것이 곧 소박한 형태이긴 하지만 再生産論으로 발전하려고 하고 있었다.

위와같은 國內市場에 대한 認識은 당연히 점차로 貨幣的 要因의 重視→貿易差額의 赤字의 욕구라는 입장을 이탈하면서 重商主義의 世界에서 「스미드」의 世界로 移行하려 하고 있었다. 이리하여 최종단계에 있어서의 重商主義期의 經濟學은 「스튜아트」와 「터커」가 서로 대립하여 큰 진통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데포」→「터커」의 立場은 특히 「스미드」에로의 接續이라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특질을 가지고 있었다.

첫째는 高賃金論과 自由貿易論이다. 國內市場은 保護制度에 의하여 방위되어야 하지만 低賃金經濟論을 비판하는 市場論의 배후에는 生産者大衆의 相對的 富裕→勞動意慾 및 勞動能力의 上昇이라는 사실이 있고, 또 매뉴팩처의 限界內의 組織과 技術의 進歩로 말미암은 英國의 機械的 生産力과 資本의 優越이 高賃金을 상쇄할 수 있다고 認識됨으로써 자연히 自由貿易의 요청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自由貿易」은 「토리」黨의 自由貿易과 달리 保護主義의 達成에 의하여 성립된 것이었다. 이와같은 高賃金論 및 自由貿易論의 系譜는 「반더린트」→「홉」→「터커」에로 연결되어 곧 「스미드」의 自由貿易論과 舊植民地制批判에 도달하는 것이다.

둘째는 勞動에 관한 認識이다. 위와같은 市場에 관한 認識은 당연히 勞動(但 具體的인 勞動)이 富의 源泉이라는 思想과 결합한다. 이 思想은 훨씬 이전에 「페티」(W. Petty, 1623-87)의 *A Treatise of Taxes & Contribution*(1662)와 「로크」(J. Locke, 1632-1704)의 *Two Treatises of Government* (1690)에서 나타났는데, 「페티」는 土地를 富의 어머니 勞動을 富의 아버지라고 하였으며, 「로크」는 土地와 勞動이 富에 加하는 寄與者 後者の 기여가 훨씬 크다고 하였다. 그 이후 「터커」에 이르기까지 勞動 그것이 富를 만드는 것이라는 認識은 거의 重商主義者를 일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認識은 어떠한 賃金論과도

결합할 수 있었기 때문에, 外國貿易의 重視——低賃金論의 立場에서는 重商主義에 특유한 人口 즉 國力論——人口增加論을 전개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勞動——富의 觀念은 重商主義에 固有한 靜態의인 貨幣=富의 觀念——一國의 貿易差額의 黑字 즉 그 經濟的 利益은 그것과 同量의 他國의 損失을 의미하며, 國內市場에서의 去來는 그 나라의 富의 總量을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觀念——을 그 根底로부터 전복하고 流通過程의 把握을 生産過程의 把握에까지 深化시킨 점에 그 意義가 크다고 할 것이다.

셋째는 剩餘價値의 把握에 관한 것이다. 勞動을 富의 源泉이라고 하는 觀念은 이미 「페티」에 있어서 投下勞動量을 價値의 尺度로 하는 思想에까지 도달하고 있었다. 다만 그 에 있어서는 價値란 아직 相對的 價値이고 價値創造勞動이란 抽象的 人間勞動이 아니라 土地와 협력하는 具體的 有用勞動이었지만. 그리하여 이러한 認識은 「페티」와 「로크」에 있어서 生産過程上의 剩餘의 發生과 直接生産者로부터의 搾取의 觀念을 낳게 되었다. 그러나 原始蓄積의 完成과 獨立生産者層의 分解의 終了라는 사실이 파악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理論的 到達點으로부터 資本家에 의한 勞動者의 搾取 商品價値의 利潤과 勞賃으로의 分解 資本을 생산하는 勞動으로서의 生産的 勞動이라는 認識이 명확해질 수는 없었다.

結 論

이상에서 重商主義의 成立基盤, 이 基盤위에서 추진된 經濟政策, 그리고 資本主義社會에로의 移行期라는 社會經濟狀態에 照應한 經濟理論에 관하여 대강 고찰해 보았다.

일반적으로 重商主義는 近代絶對主義諸國家의 形成期로부터 英國産業革命의 開始期까지의 사이에——즉 거의 16세기초기에서 18세기후반까지의 3백년동안——「유럽」諸國을 지배한 經濟政策 經濟思想 經濟理論의 總稱이라고 定義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폭넓은 規定은 과도한 一般化에 빠질 罅리가 있는 것이다. 이미 논술한 바와 같이 이처럼 폭넓은 歷史的 時期의 始期와 末期를 비교하면, 거기에는 현저한 經濟的 變化와 發展이 보일 뿐만 아니라 資本主義의 初期에 있어서는 支配的 勢力의 明確한 交替까지도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同期間에 있어서 「유럽」各國은 그 初期資本主義의 前提(出發點)에 커다란 相違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英國은 淸教徒革命을 거쳐 名譽革命(1688年)에 이르러 市民革命을 완성하고 初期資本主義를 위한 國家機構를 整備한데 비해서 「프랑스」는 18세기말의 大革命으로 市民革命이 완성되었고 獨逸은 1848년의 3月革命에

서 비로소 타협적이긴 하지만 市民革命이 수행된 것이다.

이와같이 通說로서의 重商主義觀은 그 内部에 서로 相異한 歷史的 性格을 가진 두 體制를 포함하면서 最大公約數的인 政策 및 理論을 망라한 조잡한 一般化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學說史的으로는 「스미드」의 『國富論』의 刊行(1776年)에 의하여 克服 解消되고, 政策史的으로는 美國의 獨立戰爭(1775—85) 產業革命의 進行 自由貿易諸政策의 實現(19세기 중엽)에 의하여 克服 解消된 重商主義를 歷史上 올바르게 定立하기 위해서는, 重商主義란 初期產業資本家가 市民革命을 거쳐 國家權力을 이용하여 原始蓄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한 經濟政策體系와 이것을 뒷받침한 諸理論의 集合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筆者 서울大學校商科大學
韓國經濟研究所 補助研究員
서울大學校商科大學 助教授 }